

② 농업종합자금지원

I 사업개요

□ 목 적

-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·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

□ 사업내용

- 농업인 등에게 시설·개보수자금, 운전자금 등 지원

□ 지원 자격 및 요건

-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, 관련서류 등을 대출 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

□ 지원내용 및 예산

- 지원 내용 :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게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해 자금 지원
- '24년 예산 : 3,196,726백만원(융자규모)

- *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(다만, 당해년도 예산 중 스마트팜지원 1,000억원, 수출및규모화 및 농산물가공사업 8,000억원(전통주 500억 포함),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100억원, 꿀·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32억원, 쌀가공 산업육성지원 350억원 및 기술창업자금지원 700억원, 농기계 생산지원 3,000억원, 농기계 구입지원 6,100억원,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, 무기질비료원료구입 자금지원 4,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,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 가능)
- * 농기계 생산지원 :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·설비,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
- *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: 농기계수리용 장비, 농기계수리용 부품확보, 농기계 보관창고, 농기계수리용 시설 설비

□ 사업 신청

- 장소 : 농협은행 및 지역농·축협
- 신청기간 : 연중

□ 대상자 선정

- 사업 신청 시 대출취급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

* 단, 꿀·녹용가공산업육성, 쌀가공산업육성지원, 기술창업 자금지원, 농기계생산 및 사후 관리지원사업,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은 대출대상자 선정·통지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대출취급기관은 업체별 지원액 선정 범위 내에서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최종 대출액 및 지원여부를 결정함

□ 담당 기관 및 연락처

▶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 세부사업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구분	세부사업	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㉔-1. 농축산 생산· 지원	가. 원예·축산 생산업 나. 수출 및 규모화사업	농림축산식품부	농업금융정책과	과 장 강동윤 사무관 안광현	044-201-1751 044-201-1760
		NH농협은행	농업금융부	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	02-2080-7575 02-2080-7582
	다. 고품질우렁잠자리개발사업 라. 천적 및 곤충사업	농림축산식품부	스마트농업정책과	과 장 이정삼 사무관 강태원	044-201-2421 044-201-2419
		NH농협은행	농업금융부	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	02-2080-7575 02-2080-7582
㉔-2. 스마트팜 종합자금	가. 스마트팜 종합자금	농림축산식품부	스마트농업정책과	과 장 이정삼 사무관 강태원	044-201-2421 044-201-2419
		NH농협은행	농업금융부	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	02-2080-7575 02-2080-7582
	가. 농산물가공사업	농림축산식품부	농업금융정책과	과 장 강동윤 사무관 안광현	044-201-1751 044-201-1760
		NH농협은행	농업금융부	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	02-2080-7575 02-2080-7582
		농림축산식품부	축산경영과	과 장 정재환 사무관 박일수	044-201-2331 044-201-2335
		(사)한국양봉협회	총 괄	전 무 선문규	02-3486-0883
	나. 꿀·녹용가공산업육성	(사)한국사슴협회	총 괄	사무총장 최춘태	02-587-4343
		NH농협은행	농업금융부	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	02-2080-7575 02-2080-7582
		다. 쌀가공산업육성지원	농림축산식품부	식량정책과	과 장 변상문 서기관 이한병
	전략작물육성팀			과 장 조은지 사무관 조수영	044-201-2911 044-201-2914
	NH농협은행		농업금융부	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	02-2080-7575 02-2080-7582

	라. 기술창업자금지원	농림축산식품부	스마트농업정책과	과 장 이정삼 사무관 권병철	044-201-2411 044-201-2425
		한국농업기술진흥원	기술평가센터	센터장 이정인 연구원 김지영	063-919-1470 063-919-1478
		NH농협은행	농업금융부	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	02-2080-7575 02-2080-7582
②-4.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	가. 농기계구입/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	농림축산식품부	첨단기재증서과	과 장 문태섭 사무관 이 현	044-201-1891 044-201-1896
		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	정책지원팀	팀 장 장길수 차 장 송동호	041-411-2121 041-411-2122
		NH농협은행	농업금융부	팀 장 김여진 과 장 이명은	02-2080-7575 02-2080-7584
	나. 무기질비료원료구입 자금지원	농림축산식품부	첨단기재증서과	과 장 문태섭 사무관 이흥숙	044-201-1891 044-201-1892
		한국비료협회	-	이 사 박춘근	02-552-2813 02-552-2812
		NH농협은행	농업금융부	팀 장 김여진 차 장 김미영	02-2080-7575 02-2080-7582
②-5. 농촌관광 산업지원	가. 농촌체험휴양마을 나. 관광농원	농림축산식품부	농촌경제과	과 장 최정미 사무관 김한승 사무관 이영은	044-201-1581 044-201-1592 044-201-1590
		NH농협은행	농업금융부	팀 장 김여진 차 장 김미영	02-2080-7575 02-2080-7582
	다. 농촌민박				

II 주요내용

[용어의 정의]

- "농업종합자금(이하 "종합자금"이라 한다)"이라 함은 대출취급기관이 농업 경영체 등에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을 말함(정부에서는 대출취급기관 융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함)
 - * 이차보전 :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축산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함
- "농업경영체"라 함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함
- 종합자금 "대출취급기관"이라 함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 하는 다음 기관을 말함
 -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
 -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 정하는 금융기관

- “자금운용”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서 총괄하며, 품목별·축종별 종합자금의 운용,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점검·평가업무는 각 사업 담당부서 책임하에 추진함
- “세부시행지침(이하 “세부지침”이라 한다)”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각 기관별로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(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의 세부지침은 농협은행에서 작성)
 -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운용부서로부터 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 - 세부지침의 효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날부터 발생. 세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음

[공통사항]

- 1) (기본자격)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,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
- 2) (지원제외) 기본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가) 농협,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
 - *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대출취급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(단, 만 65세 이하에 한함)
 - 다만,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
 - 나) 농업경영체 중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. 단, 사업대상자를 비농업경영체로 하는 경우는 제외
 - * 대출취급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징구하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“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” 또는 대출취급기관 전산시스템 「농업경영체 등록정보」에서 내용을 확인 및 출력하고 대출증서에 첨부
 - 다) 농업경영체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,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(단, 시설 부족 등으로 영농활동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또는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가능)
 - 라)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운전자금(예, 계열주체로부터 가축, 사료 등을 지원받아 위탁생산하고 있는 경우)

마)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다음의 자
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
-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15억원 이상인 개인(단,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당해 사업 이외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최초 대출지원 이후 도래하는 결산기부터 재무제표 의무 제출)
-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(개인 및 법인)
- 관광농원사업자(단,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이내인 신규사업자는 예외)
- *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와 지원금액 1천만원 미만의 농기계구입자금인 경우 재무제표 제출 생략(개인 및 법인)

바)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

사) 미곡종합처리장(RPC)·도정공장(단,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은 적용 제외 하며, 미곡종합처리장은 곡물건조기, 곡물냉각기,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가능)

아) 타 농업정책사업(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)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

- 다만,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출취급 가능
- * 타 농업정책사업 관련 추후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

<지원한도 산출 예시>

- '보조금+자부담' 지원 사업(예, 보조 50%, 자부담 50% 사업인 경우) : 총 사업비(1억원) 중 대출한도액(80%, 8천만원)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(3천만원)만큼 지원 가능
- '보조금+융자+자부담' 지원 사업 : 타 사업 자부담분 지원 불가

자) 종자개발·보급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민형사 사건으로 피소되어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. 다만,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

차)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허가대상이나 미허가인 자 또는 축산업 등록대상이나 미등록인 자(단, 허가대상이나 기 등록 중인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)

카) 「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(단, 농기계구입자금은 지원 가능)

- 다만,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 예는 지원 가능
- * 상기 품목 외에 임산물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소진 후 농업종합자금 지원 가능

[세부사업별 지원조건]

②-1. 농축산 생산지원

1. 사업대상자

- 원예·축산업자/ 수출 및 규모화사업 /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/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가. 원예·축산 생산업

- 원예·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, 생산자단체
 - * 원예·축산물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으로 정하는 농산물(임산물 제외)을 말한다. (친환경 묘삼 시설재배, 인삼 다단계시설물 포함)

나. 수출 및 규모화사업(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)

-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 - 생산 고도화 또는 수출 확대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·축산물 생산을 하는 농업경영체
 - 자가 생산한 농·축·임산물을 가공(가공과 연계된 유통, 저장 포함)하는 농업경영체

※ 융자금의 회수

- '19.1.1부터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식품업체 및 생산자단체는 '농산물가공사업'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고,
- 기지원 받은 사업자가 만기도래한 융자를 '농산물가공사업'을 통하여 재약정(대환)할 경우 대출금액의 10%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

다.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

- 「종자산업법」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(다만, 종자개발·보급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민형사 사건으로 피소되어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)

라. 천적 및 곤충사업

-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,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

3. 대출금리

가. 시설·개보수자금 : 연리 2.0%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

나. 운전자금 : 연리 2.5%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

다. 수출 및 규모화사업 :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1.3%~2.8%를 차감한 금리 적용

< 지원 금액별 정부이차보전 금리 >

- 지원금액 10억원 미만 : 2.8%
-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: 2.3%
- 30억원 이상 : 1.3%
- * 다만,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 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.0%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

라.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(고정, 변동) 선택 가능

* 고정금리 :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

* 변동금리 :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
(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)

마.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, 분기납, 반기납, 연납 중 택일 가능

4.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

가. 시설자금

1) 대출기간

-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: 원예, 농산물가공, 고품질우량종자, 천적 및 곤충생산

-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: 축산,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(인삼재배시설포함)

*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

2) 지원용도

- 원예·축산분야 생산·재배시설 설치자금(관련 부대시설 포함)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

* 원예·축산분야 생산·재배시설이란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, 고정식온실, 버섯재배사, 비닐하우스, 축사, 곤충사육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

-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(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) 설치자금

-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·저장시설(온실, 실험실, 저온저장고 등) 설치자금

다. 운전자금

1) 대출기간 : 2년 이내 상환

- 다만,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4~6년 이내,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3년 이내 상환

2) 지원용도

-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(고품질수량종자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, 시험비 포함)

* 가축입식자금, 농·축산물 매취자금(농산물가공사업,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)은 지원 불가

- 원예·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(단,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)
-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
-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·대환하는 경우(단, 인삼식재자금은 제외)

* 운전자금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환 가능(단, 종합자금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함)

3) 지원한도 :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

라. 기타 유의사항

-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

②-2. 스마트팜 지원

1. 사업대상자

- 스마트팜지원사업자(일반 및 청년농업인)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가. 스마트팜지원사업(동일인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단, 청년농업인 대출한도 30억원 포함)

- (일반 스마트팜 사업자) 해당분야 경력이 있으며 영농교육을 이수한 자로,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·농업법인 (단, 농업생산과 관련 없는 일반 법인과 농협 및 공공기관이 출자한 농업법인은 제외)

- (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업자)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
- 정부가 지정한 「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」 교육이수자